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유엔에스엔지니어링(이태곤)

나. 전화번호 : ① 031-382-5717

2. 명칭 : 아치 형상의 부재와 강봉을 포함하는 아치형 띠장(TAW)을 설치하여 버팀보 간격을 증대시킨 흠막이 가시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흠 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부재의 형상만으로 체적의 증가 없이 외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아치 구조의 아칭 효과를 흠막이 가시설 띠장에 적용한 공법으로, 굴착면 배면 측으로 볼록한 아치 형상의 부재가 포함되어 작용하는 토압을 띠장 전반에 분산시켜 띠장의 굴착면 지지길이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아치 형상의 부재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소정의 인장력을 도입하여 굴착면 토압에 대한 띠장의 내하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치형 띠장(TAW, Tied Arch Wale) 공법이다

<범위>

굴착면 배면 측으로 볼록한 아치 형상의 부재를 포함하고 아치 형상 부재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인장력을 도입한 아치형 띠장(TAW)을 설치하여 굴착면 상 버팀보 설치 간격인 띠장의 지지길이를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TAW)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13호

엑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케이엑셀러레이터 주식회사	2019-8	'19.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14층(여의도동)
주식회사 엔텔스	2019-9	'19.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8층 (청담동, 금하빌딩)

●문화재청공고제2019-7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54-3 등 36필지를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정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m²

○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m²

4) 정정 사유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문화재청고시제2018-118호)의 토지조서 상 오기(소재지, 면적 등)를 정정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